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6. 9.1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9.16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한국거래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마. 특수형태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나. 투자 제한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정보
나. 재무상태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라. 채권평가회사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나. 잔여재산분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라. 손해배상책임
마. 재판관할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나. 투자목적의 투자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9.11)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펀드 코드: 35288)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주식 투자에 따른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에 따른 **추적오차 발생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KOSPI200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없음	0.1500%	0.001%		0.1615%	16	33	50	88	199

(주1)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3)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명칭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5/09/12~ 26/09/11	24/09/12~ 26/09/11	23/09/12~ 26/09/11	21/09/12~ 26/09/11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2-10-11	142.89	83.46	50.59	24.16	13.77
비교지수(%)	2002-10-11	140.14	80.22	47.76	21.67	11.94
수익률 변동성(%)	2002-10-11	41.94	32.76	28.82	24.46	21.83

- 비교지수 : KOSPI200*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재욱	1983	책임(팀장)	13개	49,983억원	77.88%	141.76%	85.12%	143.34%	17년 8개월

운용전문인력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table>
<tr><td>주요투자위험</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td><td>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방법</td><td>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td><td>환매방법</td><td>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1533-0300)</td></tr>
<tr><td>모집기간</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td><td>모집·매출총액</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9.16</td><td>존속기간</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펀드코드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528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투자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가능)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방법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③ 위의 ①또는 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또는 ②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상장시장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02.10.14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펀드코드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528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2.10.11	최초 설정
2008. 6.30	신탁보수인하
2009. 5. 3	자본시장법에 따른 명칭 변경(삼성KODEX200상장지수투자신탁→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9. 7.29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증권 추가
2009.10.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SC제일펀드서비스 -> 한국예탁결제원)
2011. 1. 3	투자신탁 보수 변경
2012.12.17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2013. 3.22	운용역 변경(사봉하 → 이정환)
2013. 5. 2	투자신탁 보수 변경
2014. 2.10	설정단위 변경
2015. 1.16	운용역 변경(이정환 → 김승욱)
2016. 2. 4	운용보수 인하
2020. 6.12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
2021. 4.27	운용역 변경(김승욱 운용역 → 정재욱 운용역)
2022.12.1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 신한아이타스)
2024. 3.21	운용/판매보수 조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1533-0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재욱	1983	책임(팀장)	13개	49,983억원	77.88%	141.76%	85.12%	143.34%	17년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정재욱	2008년 12월 ~ 2015년 06월 동부투신운용 AI운용본부 2015년 07월 ~ 現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정재욱	2021. 4.27 ~ 현재

주1) 2026. 9.16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투자신탁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이 투자신탁은 한국종합주가지수200(이하 "추적대상지수"라 한다)를 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나. 추적대상지수 : KOSPI200 x 100%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추적대상지수가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KOSPI200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종목구성제한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지수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로부터 교체종료일까지
추적대상제한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추적대상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지수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로부터 교체종료일까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 전략

1) KOSPI200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업자인 삼성자산운용㈜는 KOSPI200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를 감안한 종목으로 투자가능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능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감안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합니다. 삼성자산운용(주)는 이렇게 표본추출된 종목군과 KOSPI200 지수의 파생상품인 주가지수선물 등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그 운용방침으로 합니다.

2) KOSPI200 지수의 개요

- **KOSPI200 지수는 증권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에서 200종목만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로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을 감안하여 편입종목을 결정하며, KOSPI200 지수 산출의 기준일은 1990년 1월30일이며, 기준지수는 100pt입니다.**

3) 지수 산정 방법 등

① 기준일 및 기준지수: 1990년 1월 30일, 100pt

② 산출 방식 및 정기변경: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시가총액식, 연 2회 (매년 6월 및 12월)

(2)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추적대상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대부분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총액기준 하위종목의 비율이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비율을 조절하거나 투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적대상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대상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3) 포트폴리오 조정

1)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변화 또는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① 추적대상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② 추적대상 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또는 CB전환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③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④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2) 집합투자업자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 수익률을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4) 추적오차 발생 요인

·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납입자산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②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③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의 충분한 사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OSPI200지수("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지수의 변경을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KOSPI200] x 100%

(6)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 즉,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 위험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u>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OSPI200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를 감안한 종목으로 투자가능대상 종목을 구성하고, 당해 투자가능대상 종목 중에서 추적오차를 감안하여 종목군을 표본추출(Sampling)합니다.</u>**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1)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 매우높은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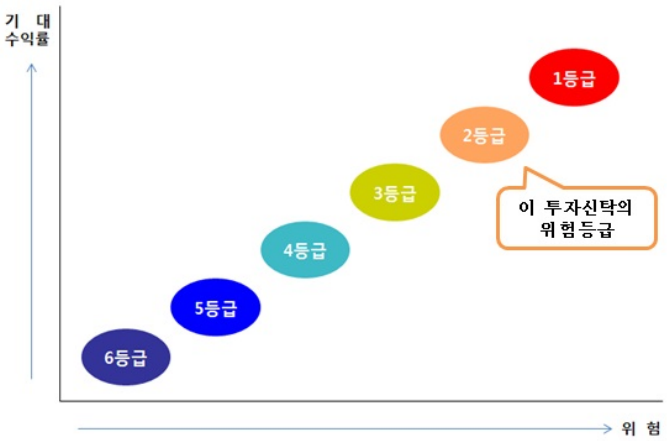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 낮은위험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구간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40.67%** 입니다.

주3)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인버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및 환변동성 노출여부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입

1)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1)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증권 및 자금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단위(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ETF(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1)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2)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4) 설정절차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위 2)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입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금전"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금전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대납금전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② 대납금전의 정산: 대납금전의 비율이 ①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①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③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4)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투자자가 2)의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입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으로 변경(이하 "납입금등의 매매"라 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지정참가회사가 5)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법 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입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납입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6)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탁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는 신탁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납입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위 5)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입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입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함)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입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위 5) 내지 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입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입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②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입금등을 매매한 경우

10) 위 5) 내지 7)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②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2) 위 1)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기초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기초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위 12)에서 규정된 구체적 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수익자 통보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신청)	신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증권시장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6) 종류별 가입자격

- 해당사항 없음

(7)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해당사항 없음

(8)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4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

1)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매도 가능.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2)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절차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는 1)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1) 및 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위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위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위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함

②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함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위 7) 내지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①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②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함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7)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가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 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위 11)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위 1) 내지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기초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기초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④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⑤ 위 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⑥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 위 13)의 구체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4)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T-1	T	T+1	T+2
수익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수익자 통보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에 변경 상장 신청)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증권시장 등)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5)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7)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가능
X	X	0

다. 실물 입·출고 등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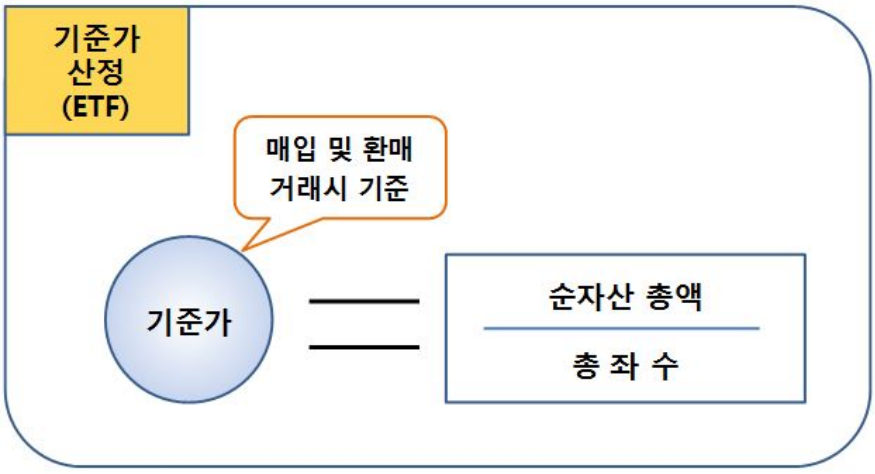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1좌당 가격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증권시장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명칭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0.124	0.001	0.01	0.015	0.15	0.0115	0.1615	-	0.1615	0.0283
지급시기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2,107,188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명칭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150	32,734	50,147	87,630	199,0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150	32,734	50,147	87,630	199,01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식재산권 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10)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11)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나. 투자신탁분배금

(1) 집합투자업자는 가.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5)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3)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

다.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41기 (2025.12.31)	제 40기 (2024.12.31)	제 39기 (2023.12.31)
운용자산	11,674,882,483,513	5,470,290,029,696	6,513,611,914,947
증권	11,664,586,425,065	5,451,114,100,710	6,508,236,897,44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296,058,448	19,175,928,986	5,375,017,50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6,578,601,468	23,948,194,327	49,414,835,604
자산총계	11,701,461,084,981	5,494,238,224,023	6,563,026,750,55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636,326,482	3,007,153,429	1,832,677,681
부채총계	4,636,326,482	3,007,153,429	1,832,677,681
원본	1,497,413,135,325	1,337,408,083,075	1,415,849,584,300
수익조정금	413,687,222,143	44,889,687,334	63,361,877,351
이익잉여금	9,785,724,401,031	4,108,933,300,185	5,081,982,611,219
자본총계	11,696,824,758,499	5,491,231,070,594	6,561,194,072,870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1기 (2025.01.01 ~ 2025.12.31)	제 40기 (2024.01.01 ~ 2024.12.31)	제 39기 (2023.01.01 ~ 2023.12.31)
운용수익	5,149,888,235,487	-722,237,938,248	1,138,646,431,986
이자수익	320,171,148	331,587,894	438,144,951
배당수익	150,432,778,504	121,545,162,770	96,042,030,438
매매/평가차익(손)	4,996,886,734,530	-845,916,591,602	1,040,052,633,772
기타수익	2,248,551,305	1,801,902,690	2,113,622,825
운용비용	13,154,065,277	11,438,645,557	10,245,884,398
관련회사 보수	10,053,285,657	8,435,708,118	8,040,052,876
매매수수료	468,346,210	781,170,865	60,800,360
기타비용	2,632,433,410	2,221,766,574	2,145,031,162
당기순이익	5,136,734,170,210	-733,676,583,805	1,128,400,547,588
매매회전율	9	15	11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3,023,056	901,706	12,095,389	627,843	7,062,723	8.89	14.06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4기 (2025. 1. 1~2025.12.31)	23기 (2024. 1. 1~2024.12.31)	22기 (2023. 1. 1~2023.12.3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2249	1802	211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2025. 1. 1~2025.12.31)			전기 (2024. 1. 1~2024.12.31)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1,529,155	978	0.06	1,529,424	729	0.05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0	0	0.00	1,316	1	0.08
부동산			0.00			0.00
장내파생상품	3,654,535	468	0.01	2,656,792	781	0.03
장외파생상품			0.00			0.00
기타	12,304,466	660	0.01	6,645,581	566	0.01
합계	17,488,156	2,106	0.08	10,833,113	2,077	0.17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단위:원]

과 목	제41기(2025.12.31)		제40기(2024.12.31)		제39기(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0,296,058,448		19,175,928,986		5,375,017,507
1. 현금및현금성자산	8,864,148,888		4,085,357,254		5,071,945,067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1,431,909,560		15,090,571,732		303,072,44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1,664,586,425,065		5,451,114,100,710		6,508,236,897,440
1. 지분증권	11,362,913,625,065		5,055,090,250,710		6,254,453,897,44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301,672,800,000		396,023,850,000		253,783,000,00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26,578,601,468		23,948,194,327		49,414,835,60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37,322,714		888,872,811		5,079,883,353	
2. 정산미수금	286,315,952		1,540,523,600		2,523,268,500	
3. 미수이자	11,673,747		15,470,114		32,197,135	
4. 미수배당금	26,043,289,055		21,503,327,802		41,779,486,616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1,701,461,084,981		5,494,238,224,023		6,563,026,750,551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기 타 부 채		4,636,326,482		3,007,153,429		1,832,677,68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1,548,080,325		1,402,467,900		3,238,81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3,086,090,557		1,602,527,929		1,827,241,271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2,155,600		2,157,600		2,197,600	
부 채 총 계		4,636,326,482		3,007,153,429		1,832,677,681
자 본						
1. 원 본	1,497,413,135,325		1,337,408,083,075		1,415,849,584,30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0		0	
3. 이월잉여금	10,199,411,623,174		4,153,822,987,519		5,145,344,488,570	
(발행좌수 당기: 191,850,000 좌	이익잉여금	9,785,724,401,031	이익잉여금	4,108,933,300,185	이익잉여금	5,081,982,611,219
전기: 좌	수익조정금	413,687,222,143	수익조정금	44,889,687,334	수익조정금	63,361,877,351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60,969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1,696,824,758,499		5,491,231,070,594		6,561,194,072,87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701,461,084,981		5,494,238,224,023		6,563,026,750,551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 41기 (2025.01.01 ~ 2025.12.31)		제 40기 (2024.01.01 ~ 2024.12.31)		제 39기 (2023.01.01 ~ 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0,752,949,652		121,876,750,664		96,480,175,389
1. 이 자 수 익	320,171,148		331,587,894		438,144,951	
2. 배당금수익	150,432,778,504		121,545,162,770		96,042,030,438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989,800,930,341		2,052,187,377,393		1,729,906,052,983
1. 지분증권매매차익	5,318,447,310,492		1,199,418,538,295		1,687,887,363,74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564,803,737,259		840,701,618,364		29,530,916,9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0		30,968		14,798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7. 기타거래차익	106,549,882,590		12,067,189,766		12,487,757,53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91,133,990,716		2,897,083,237,170		687,800,596,746
1. 지분증권매매차손	344,898,609,338		1,857,608,026,927		543,350,519,18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96,616,835,952		882,595,027,699		20,300,703,86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0		52,251		30,968	
6. 대손상각비	0		0		0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0		0		0	
8. 기타거래손실	149,618,545,426		156,880,130,293		124,149,342,731	
운 용 비 용		12,685,719,067		10,657,474,692		10,185,084,038
1. 운용수수료	9,234,129,365		7,689,948,750		7,146,713,963	
2. 판매수수료	74,468,601		120,892,250		297,779,580	
3. 수탁수수료	744,687,691		624,867,118		595,559,333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관련비용	0		0		0	
6. 기타비용	2,632,433,410		2,221,766,574		2,145,031,16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136,734,170,210		-733,676,583,805		1,128,400,547,58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26,775		-4,282		6,22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명칭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1.1 ~2026.6.30	2	14,974	10	77,727	9	73,735	2	16,305
	2025.1.1 ~2025.12.31	2	13,374	22	171,810	21	167,010	2	14,974
	2024.1.1 ~2024.12.31	2	14,158	21	162,292	21	165,277	2	13,374
	2023.1.1 ~2023.12.31	2	13,655	15	114,681	15	113,674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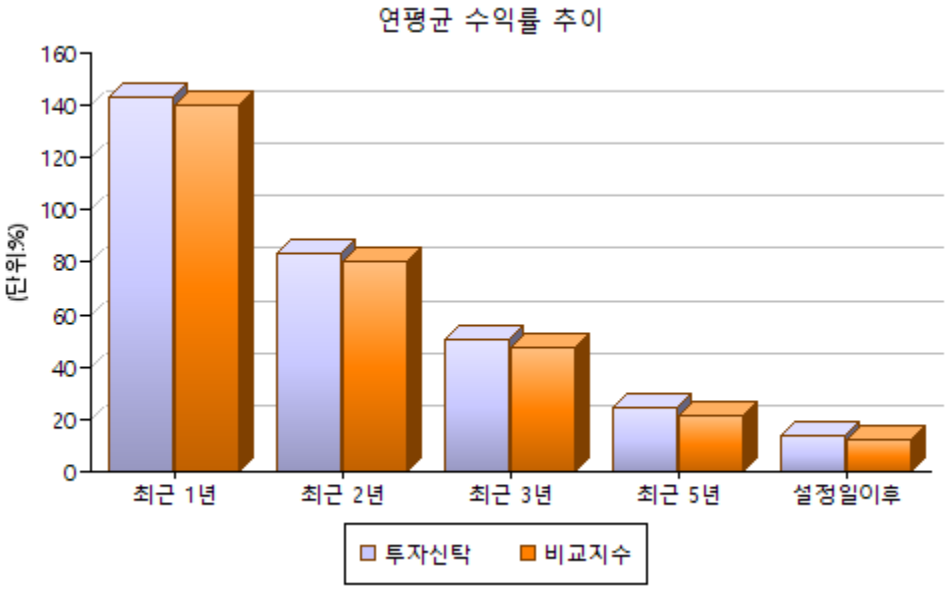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연도	최근 1년 (25.09.12 ~26.09.11)	최근 2년 (24.09.12 ~26.09.11)	최근 3년 (23.09.12 ~26.09.11)	최근 5년 (21.09.12 ~26.09.11)	설정일이후 (02.10.11 ~26.09.11)
투자신탁	142.89 %	83.46 %	50.59 %	24.16 %	13.77 %
비교지수	140.14 %	80.22 %	47.76 %	21.67 %	11.94 %
수익률변동성	41.94 %	32.76 %	28.82 %	24.46 %	21.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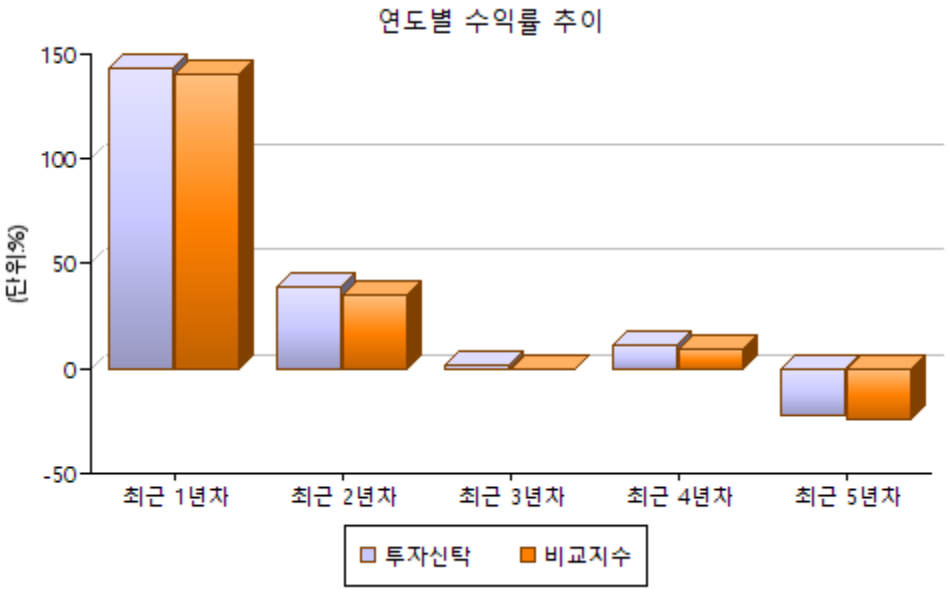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200*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연도	최근 1년차 (25.09.12 ~26.09.11)	최근 2년차 (24.09.12 ~25.09.11)	최근 3년차 (23.09.12 ~24.09.11)	최근 4년차 (22.09.12 ~23.09.11)	최근 5년차 (21.09.12 ~22.09.11)
투자신탁	142.89 %	38.57 %	1.57 %	11.67 %	-22.68 %
비교지수	140.14 %	35.26 %	-0.57 %	9.21 %	-24.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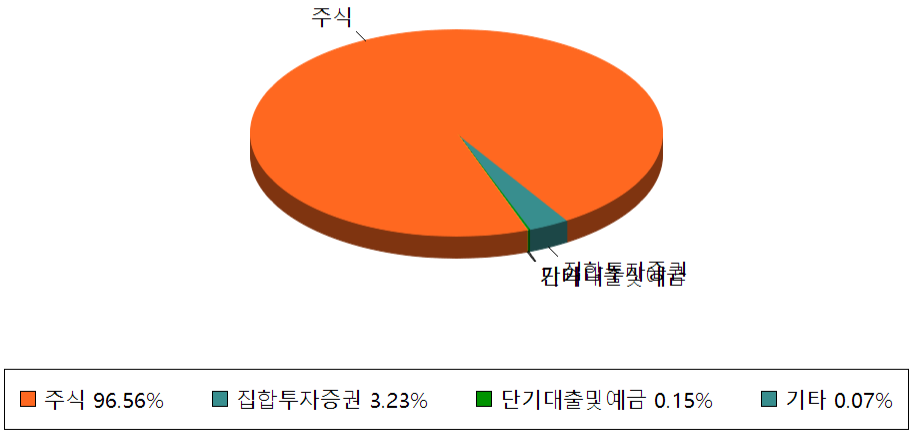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200*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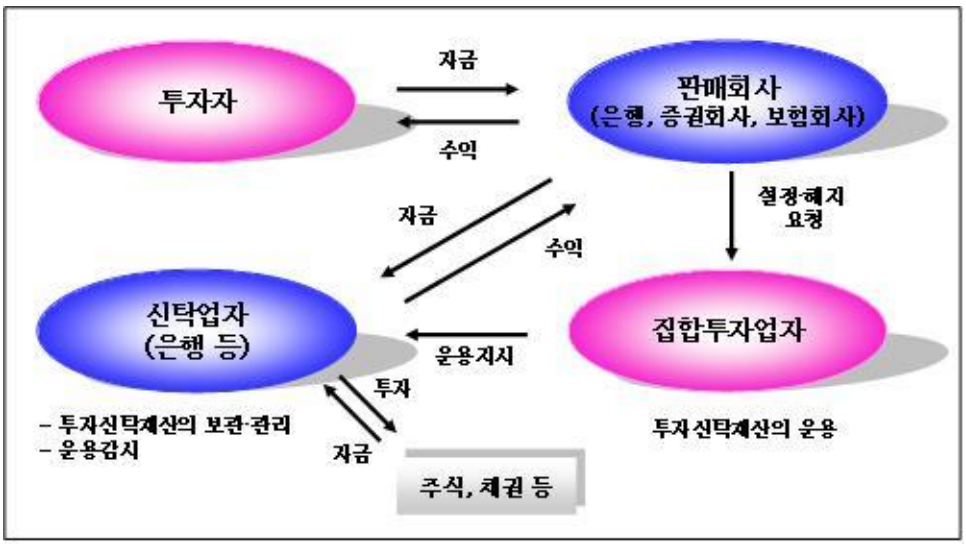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6.30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274,183	0	0	9,168	0	0	0	0	0	0	413	190	283,953
합계	274,183	0	0	9,168	0	0	0	0	0	0	413	190	283,953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1533-0300, http://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09.15 설립등기 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 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1.11.05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 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 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 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 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 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 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 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 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

회사 연혁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 상장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2017.09.08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 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2021.12.14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100%)
사업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等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4.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 무 상 태 표

제28(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27(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말		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5	11,310,348,223		8,561,059,445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6,20,33	424,902,893,065		198,092,729,509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7,33	720,892,387		699,595,261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8	158,348,626,198		143,084,951,549	
V. 종속기업투자	9	486,142,349,087		571,666,427,095	
VI. 유형자산	10	2,353,935,642		2,341,933,896	
VII. 사용권자산	11	19,284,904,625		24,868,811,277	
VIII. 무형자산	12	20,480,673,997		25,439,442,468	
IX. 순확정급여자산	18	3,270,813,416		2,487,432,763	
X. 이연법인세자산	29	2,020,483,386		2,486,674,976	
XI. 기타자산	13	2,484,128,434		3,159,504,407	
자 산 총 계			1,111,320,048,460		982,888,562,648
부 채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4,14,20,33	-		2,181,868,447	
II. 예수부채	4,15	2,226,837,880		19,382,408,217	
III. 기타금융부채	4,16	75,601,387,962		68,435,155,942	
IV. 충당부채	17	270,301,169		257,396,263	
V. 당기법인세부채		34,628,075,272		23,118,382,132	
VI. 기타부채	19	6,403,107,277		9,848,849,360	
부 채 총 계			119,129,709,550		123,224,060,361
자 본					
I. 자본금	22	93,430,000,000		93,430,000,000	
II. 자본잉여금	22	51,087,628		51,087,62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12,707,456,874)		(11,330,297,922)	
IV. 이익잉여금	23	911,416,708,156		777,513,712,579	
자 본 총 계			992,190,338,910		859,664,502,28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11,320,048,460		982,888,562,64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8(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27(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		전기	
I. 영업수익			391,227,706,607		317,611,426,131
1. 수수료수익	24	365,885,210,935		297,640,848,751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24,28	12,346,966,268		12,576,536,894	
3. 이자수익	24,28	2,807,256,199		3,194,406,212	
4. 외환거래이익	24,28	270,655,783		149,645,034	
5. 배당금수익	24,28	9,917,607,428		4,049,989,240	
II. 영업비용			245,743,109,459		208,097,668,050
1. 수수료비용	25	34,322,093,001		34,026,261,942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25,28	20,922,365,727		14,260,501,200	
3. 이자비용	25,28	3,050,816,158		3,201,599,926	
4. 외환거래손실	25,28	227,916,722		375,618,067	
5. 판매비	26	22,458,817,707		20,948,833,610	
6. 일반관리비	26	164,748,195,238		135,274,180,715	
7. 기타비용	25	12,904,906		10,672,590	
III. 영업이익			145,484,597,148		109,513,758,081
IV. 영업외손익			35,973,432,568		10,506,975,450
1. 영업외수익	27	41,640,720,714		15,180,943,390	
2. 영업외비용	27	5,667,288,146		4,673,967,94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1,458,029,716		120,020,733,531
VI. 법인세비용	29		47,555,034,139		30,800,444,754
VII. 당기순이익			133,902,995,577		89,220,288,777
VIII. 기타포괄손익			(1,377,158,952)		(1,231,549,8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77,158,952)		(1,231,549,885)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838,129,517)		(1,414,526,345)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1,297,126		(186,968,955)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의 법인세		439,673,439		369,945,415	
IX. 당기총포괄이익			132,525,836,625		87,988,738,892
X. 주당이익	31				
1. 기본주당이익			7,166		4,775

라. 운용자산규모

(2026. 9.11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993,949	42,313	334,839	542,170	924,134	272,399	150,014	9,435	36,393	3,305,64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전화번호 : 02)2180-04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3)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